

# 자동차보험의 유형별 보상사례

-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맡긴 경우의 보험처리 -

손 병 돈

<한국자동차보험(주)자동차 보상부장>

<p>자동차는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하거나, 고용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자동차를 친구 등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p>	<p>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가해자로서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피해자측에서는 자동차를 빌려준 소유자에게도 소유자라는 이유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p>
---	---

## 1.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빌려 준 경우.

자가용자동차를 요금을 받고 제 3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른바 유상운송이라 하여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일반인에게도 보험상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를 빌려 주는 예는 위와 같이 유상으로 빌려 주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통상은 직장 동료, 친구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사례 I>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이 규정 연휴에 즈음하여 같은 사무실의 직장동료에게 연휴기간 고향으로 가는데 사용하도록 빌려 주었는데 그 동료직원이 같은 고향의 친구를 옆자리에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

격, 전복하여 탑승하였던 고향친구가 사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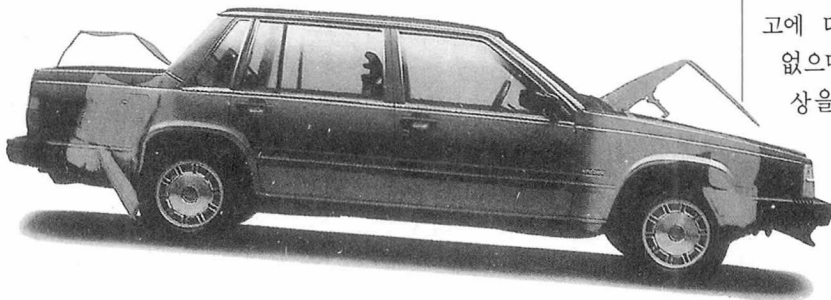
우리 주위의 자동차의 통상적인 사용실태를 보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유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경우 그들은 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도 보상을 하여 보험의 혜택을 주어야만 종합보험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합보험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당사자 본인(기명피보험자라 부른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자동차의 사용실태를 감안하여, 본인 이외의 제 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의 혜택(즉 피보험자의

자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당사자 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를 친족 피보험자라 한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당사자의 허락하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이를 허락피보험자라 한다)는 비록 보험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소유자로부터 연휴기간 동안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직장동료는 종합보험에서 이른바 허락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자동차를 빌려준 소유자도 자기가 직접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제 3조의 해석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이는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소유자는 당연히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소유자(자동차를 빌려



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그 배상요구에 응할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보험처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리업자는 고객이 맡긴 자동차를 자기

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는 동안은 비록 종업원이 임의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도 수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수리업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허락 하에 자동차의 수리의뢰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동료가 자동차를 빌린 경우처럼 허락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종합보험에서는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판매업자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락피보험자로서의 자격 즉,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취급업자 종합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에 의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자동차 수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

준 자)나 자동차를 빌린 자(직장 동료) 어느쪽도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사례Ⅱ〉

화물운수 회사의 종업원이 퇴직한 다음날 회사로 부터 영업용 화물차를 이틀간 빌려, 기숙사에 있는 개인용품을 자기 집으로 운반한 다음, 그날 저녁 자동차를 돌려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이 사례와 같이 이틀 후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기숙사의 개인용품을 집에 운반한다는 목적 하에 회사가 무상으로 퇴직 직후의 종업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회사는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제 3조의 해석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연히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다가 직접 사고를 낸 종업원도 사례 I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락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므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2. 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맡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비공장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정비공장의 종업원이 임의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 3자가 운전하던 다른 자동차를 충격, 피해자동차의 운전자가 부상당한 경우.

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경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는 수리 및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있는 것이며,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한 이후 자동차를 지배, 관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리를 맡긴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한 이후로는 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수리업